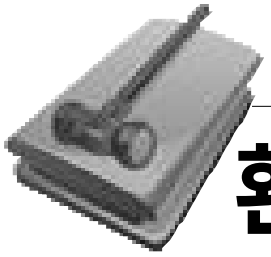

환경법 위·반·사·례

대기(수질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

- 대기(수질)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,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대기(수질)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 됨.

사례1

▶위반내용 :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정상가동
▶관 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
▶조치사항
- 고발(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) 및 조업정지 10일

▶위반사례
- ○○업소는 일일 평균 10시간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업소로서 2003년 ○○월 ○○일 ○○○시로부터 도장시설(10㎥×2기)과 동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(450㎥/분×1기,활성탄 충진량 3,375kg, 교환주기 120시간)에 대하여 배출시설치허가 등을 받아 가동하면서
-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활성탄은 120시간 사용 후 교환하여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벤젠, 톨루엔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처리 될 수 있도록 동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
- 활성탄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오염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탑내 By-pass를 설치하여 2003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2003년 ○○월 ○○일 점검일 현재까지 발암성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벤젠,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○○○ℓ를 대기로 배출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함

※ 신너배출량 산정(예)
- 신너 배출량 : 신너 사용량 – 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
- 신너 사용량 : 점검기간 신너구입량 + (페인트 구입량 × 신너함유량)
- 폐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: 폐활성탄량×신너흡착계수(동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참조)

사례2

▶ 위반내용 :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
▶ 관 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

▶ 조치사항
- 고발(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) 및 조업정지 10일

▶ 위반사례
-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02년 ○○월 ○○일 허가 받은 산처리시설(12㎥×3기), 흡수에 의한 시설 ○○○㎥/분×1기를 운영하면서
- 2003년 ○○월 ○○일 환경관리인 홍길동은 흡수에의한시설의주요시설인살수펌프가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2003년 ○○월 ○○일 현재까지 동 펌프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아니한채산처리시설(12㎥×3기)을운영하여
-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○○○kg(염산사용량kg/일×염화수소 배출계수(허가서류참고)×가동시간/일×가동일수)을 대기로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사례3

▶ 위반내용 :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

▶ 관 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

▶ 조치사항
- 고발(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) 및 조업정지 10일

▶ 위반사례
- ○○업소는 섬유제품제조업소로서 2003년 ○○월 ○○일 점검당시 도장시설(5.5㎥×1대)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○○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확인함.

사례4

▶ 위반내용 : 폐수 무단방류

▶ 관 련 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

▶ 조치사항
- 고발(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)
- 조업정지 10일(2차위반시 조업정지 3월)

▶ 위반사례
- 본 업소는 ○○제조업소로서 2003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2003년 ○○월 ○○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안료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폐수 약 ○○○통(○톤×○○일)을 방지시설(물리·화학적처리시설 140㎥/일)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함.

사례5

▶ 위반내용 : 발생폐수 희석방류

▶ 관 련 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

▶ 조치사항
- 고발(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) 및 조업정지 10일

▶ 위반사례
-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상 깨끗한 물로 희석하지 않으면 적정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
- (주)○○업소는 골판지 제조시 발생하는 ○○○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와 침전조의 용량이 부족하여 유기물질의 미분해와 침전조에서의 슬러지의 부상·월류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
- 2003년 ○○월 최종침점조 월류 배관에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연결하여 단속시에는 동 지하수 배관에 설치된 펌프를 작동시켜 배출되는 폐수를 지하수 공급압력으로 자동차단과 함께 교묘히 희석·]처리하고, 최종침전조에서 월류되는 잉여폐수는 재이용을 빙자하여 설치한 배관을 이용 생산공정으로 돌리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사실을 확인함